

장애인 • 노인 •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(약칭: 장애인등편의법)

[시행 2021. 12. 4.] [법률 제18219호, 2021. 6. 8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장애인권익지원과) 044-202-3303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19.>

- 1. "장애인등"이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- 2. "편의시설"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, 정보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- 3. "시설주"(施設主)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를 말한다.
- 4. "시설주관기관"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,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교육감을 말한다.
- 5. "공원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- 가. 「자연공원법」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
 - 나.「자연공원법」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
 - 다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
 - 라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
- 6. "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"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,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.
- 7. "공동주택"이란 「주택법」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.
- 8. "통신시설"이란「전기통신기본법」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「우편법」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제3조(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) 다음 각 호의 자(이하 "시설주등"이라 한다)는 장애인등이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 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1. 시설주
 - 2.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「건축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(「건축법」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)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제4조(접근권)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,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있는 권리를 가진다.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**제7조(대상시설)**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(이하 "대상시설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 - 1. 공원
 - 2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 - 3. 공동주택
 - 4. 통신시설
 - 5.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**제8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**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1. 15.>
 [전문개정 2015. 1. 28.]
- 제9조(시설주등의 의무)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(용도변경을 포함한다)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,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제9조의2(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)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「건축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(「건축법」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)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8.]

- **제9조의3(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)**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 [제29조에서 이동 <2015. 1. 28.>]

- 제10조(편의시설에 관한 지도·감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제10조의2(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(이하 이 조, 제10조의 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"보건복지부장관등"이라 한다)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·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(이하 "인증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 -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9. 12. 3.>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(이하 "의무인증시설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(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)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9. 12. 3., 2021. 6. 8.>
 -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·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」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
 - 2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·증축(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·개축(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재축하는 청사,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 - 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· 증축·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 -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・절차,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・절차, 인증기관 지정기준・절차,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<개정 2021. 6. 8.>

[본조신설 2015. 1. 28.]

- **제10조의3(인증의 유효기간)**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. <개정 2019.
 -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8.]

제10조의4(인증의 표시)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.

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8.]

- 제10조의5(인증의 사후관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·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[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<2019. 12. 3.>]

- 제10조의6(인증의 취소)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3.>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[본조신설 2015. 1. 28.]

[제10조의5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<2019. 12. 3.>]

- 제10조의7(인증기관 지정의 취소)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
 - 3.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
 - 5.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8.]

[제10조의6에서 이동,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<2019. 12. 3.>]

제10조의8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, 12, 3,>

[본조신설 2015, 1, 28,]

[제10조의7에서 이동 <2019. 12. 3.>]

- 제10조의9(인증 통계의 작성·관리)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9. 12. 3.]

- **제10조의10(인증운영기관의 설치)**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 - 1. 인증기관 관리 지원
 - 2. 인증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 보급
 - 3.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
 - 4.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 - 5.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6. 8.]

- 제10조의11(인증 수수료)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, 제10조의 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(이하 "인증 신청등"이라 한다)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 - 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·기간, 수수료 감면의 기준·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6. 8.]

- **제11조(실태조사)**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 2. 3.>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·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6. 2. 3.>
 -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다.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16. 2. 3.>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제12조(설치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보고)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
 - 2. 대상시설의 건축・대수선(大修繕)・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
 - 3.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
 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 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제12조의2(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)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 -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
 - 3.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
 - ③심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3. 12. 31.]

- 제13조(설치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제14조(연구개발의 촉진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(詳細標準圖)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「건축법」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**제14조의2(교육 실시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5. 1. 28.]

- 제15조(적용의 완화)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(이하 이 조에서 "세부기준"이라 한다)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- 1.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
 - 2.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 - 3.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-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, 점자(點字) 안내책자,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,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제16조(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)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, 점자(點字)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7. 27.>
 -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21. 7. 27.>
 -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,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.<개정 2021. 7. 27.>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[시행일: 2022. 7. 28.] 제16조

제16조의2(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)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,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6. 2. 3.>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**제17조(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)**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・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.
 -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.
 -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

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·절차,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·절차,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제18조삭제 <2003. 12. 31.>

제19조삭제 <2003. 12. 31.>

제20조삭제 <2003. 12. 31.>

제21조삭제 <2003. 12. 31.>

- 제22조(자료제출 요구와 검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(證票)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제23조(시정명령 등)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·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2. 3.>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・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16. 2. 3.>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- 제24조(이행강제금)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 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.
 -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.
 - 1. 이행강제금의 금액
 - 2. 부과 사유
 - 3. 납부기한
 - 4. 수납기관
 - 5. 이의 제기 방법
 - 6. 이의 제기 기관
 -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-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,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.
-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<개정 2020. 3. 24.>

[제28조에서 이동 <2015. 1. 28.>]

제25조(벌칙)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제26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전문개정 2012. 5. 23.]

제2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 2. 3., 2019. 12. 3., 2021. 6. 8.>

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(예비인증을 포함 한다)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
- 2.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
- 3.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・기피・방해한 자
- 4.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 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5.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
- 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·징수하며,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

제2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 2. 3., 2019. 12. 3., 2021. 6. 8., 2021. 7. 27.>

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(예비인증을 포함 한다)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
- 2.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

- 3.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・기피・방해한 자
- 4.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, 점자 안내책자, 보청기기,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5.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
- 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·징수하며,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시행일: 2022. 7. 28.] 제27조

제28조

[종전 제28조는 제24조로 이동 <2015. 1. 28.>]

제29조

[종전 제29조는 제9조의3으로 이동 <2015. 1. 28.>]